금융위원회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. 11. 11.(수)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11.11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신진창)는 11월 11일 제20차 회의에서, **회계처리 기준을 위반**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㈜셀바스헬스케어 및 대우산업개발㈜**에 대하여 **감사인지정**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 또한 대우산업개발㈜의 감사인으로서 **감사절차**를 **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** 및 **소속공인회계사**에 대하여 **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** 등의 조치를 **의결**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유홍근 (02-3145-7731)
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윤 (02-3145-73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6.11.11. 의결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셀바스헬스케어 결산기 : 2018.12.31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체성분분석기기 등 제조, 판매	【회사】 ① 영업권 과대계상 (연결·별도: '18년 4,847백만원) -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을 근거 없이 과다 추정하여 영업권을 과대계상함 ② 개발비 과대계상 (연결·별도: '18년 974백만원) - 회사는 개발비 손상평가 시 간접비용 등을 누락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(연결·별도: '18년 876백만원) -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정을 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④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(연결: '18년 3,384백만원) (별도: '18년 3,030백만원) - 회사는 재고자산 손상평가 시 원재료 진부화 및 제품·재공품의 판매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,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함	회 사 :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2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산업개발㈜ 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: 종합 건설업	**【회사】** ①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별도·연결 : '17년 28,256백만원, '18년 25,574백만원, '19년 22,409백만원, '20년 37,318백만원, '21년 31,048백만원) - 회사는 분양가액 및 미분양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 관련 미수채권을 회수가능한 것처럼 만들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②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(별도·연결 : '17년 1,300백만원, '18년 5,090백만원, '19년 5,090백만원, '20년 10,816백만원, '21년 18,780백만원) - 前회장 및 前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	**회 사 :** - 증권발행제한(12월) - 과징금(회사관계자) ※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회장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 - 시정요구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산업개발㈜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 ('17년~'21년)	**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** ①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별도·연결 : '17년 28,256백만원, '18년 25,574백만원, '19년 22,409백만원, '20년 37,318백만원, '21년 31,048백만원) -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 관련 미수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, 미수채권 회수가능성 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별도·연결 : '17년 1,300백만원, '18년 5,090백만원, '19년 5,090백만원, '20년 10,816백만원, '21년 17,978백만원) -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(독립성 위반) -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,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7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	**대주회계법인 :** 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% - 대우산업개발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대우산업개발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20시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대우산업개발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대우산업개발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대우산업개발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